

제400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15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5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0)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7)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1)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6)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2)
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0)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7)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3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3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8)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4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4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5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3)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75)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
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7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543)
7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7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6)
7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4)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5)
8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8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8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9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1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1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1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1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	9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	9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	9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0)	9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7)	9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1)	9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9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9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9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9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9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	9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6)	9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	9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9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9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2)	9
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9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9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10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10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0)	10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10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10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7)	10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10
3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10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10
3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10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10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10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8)	10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4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	10
4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10
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10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10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	10
4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10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10
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10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	10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10
5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10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5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10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10
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07570)	10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10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10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10
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3) ...	10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 ...	10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	10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75)	10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 ...	11
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	11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7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11
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11
7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7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 ...	11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543)	11
7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	11
7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6) ...	11
7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	11

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	11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4) …	11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5) …	11
8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	11
8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	11
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	11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	11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	11
8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	11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	11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11
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	11
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	11
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	11
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	11
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11
9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11
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	11
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	11
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	11
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	11
1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	11
1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	11
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	11
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	11
1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	11
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	11
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	11
1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	12
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	12
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15시13분 개의)

○위원장 백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께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계로 박구연 국무1차장이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전에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예, 김종민 간사님.

○김종민 위원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예정돼 있던 정무위 법안소위

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의결 과정 그리고 예산결산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과정이 양당이 합의에 의해서 같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되지 않아서 생긴, 거기서 발단이 됐는데요.

일단은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고 또 이견이 있다 보면 대화를 충분히 하고 타협을 하고 정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또 표결을 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어서 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연스러운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예산안이 함께 여야 위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진행되게 된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간사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었는데 우리가 권한 행사를 통해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양쪽 다 져야 되지만 또 다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속히, 이왕 예산 처리는 된 거고 법안이 그 예산에 의해서 또 지연되거나 법안 처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전체회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 법안소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좀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님의 사과입니까, 유감입니까, 지금 표명하신 게? 정식 사과 표현이세요, 단순 유감 표현이세요?

○김종민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송석준 위원 이것은 진짜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연말 앞두고 우리가 안보위기, 금융위기, 사회통합위기, 안전위기,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우리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

선수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16강 이뤄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제위기, 서민 민생 문제 해결에 여와 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서로 원팀으로 정말 우리가 시급한 것은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무위에서 다루어진 예산도 사실 다 정말 우리, 특히 쟁점이 됐던 호국보훈 선양 사업 예산 이것은 당연히 우리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도 뭐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그런 예산을 그냥 깎겠다 그래서 결국 파행까지 가고 결국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시고요.

특히 그것을 통과시킨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야당 간사님의 한 말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중한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위원장님이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정무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발언……

○위원장 백혜련 오기형 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오기형 위원 아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또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김종민 위원 이것은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제 발언에 다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냥 위원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 백혜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동안 또 합의에 이르러서 오늘 전체회의를 개의했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김진태발 금융위기 관련해서 다양한 채권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 11월 4일, 11월 18일, 11월 23일.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몇 번 개별적으로 이명순 부위원장님이나 고상범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자료 설명도 했었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

료제출을 요청한 게 있으니까 요청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 이슈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적용하겠다는 데에서는 이견 큰 판단의 문제라 함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속 화물연대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로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해 드립니다.

이 내용이 보면, 우리가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노동법이나 경쟁법이나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행동에 대해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 그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 모자 만드는 회사 노동 탄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노동총연맹이 불매운동을 했는데 그걸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반성을 하고 나서, 1914년 미국 클레이튼법인데 제가 그 법을 영문하고 한글 번역본 그대로 넣어 놔습니다.

잠깐 한번 봐 보시지요.

‘인간의 노동은 상품 또는 상거래 품목이 아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반독점법은 노동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노동단체는 반독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건데.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반독점법의 특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1세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도대체 경쟁법의 철학이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하시는가.

제가 화물연대가 불법적으로 뭘 했다 하면 그것 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법을 적용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법이 적용되느냐 경쟁법이 적용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입차주 같은 경우도, 지입차주

에 대해서 외형상으로는 계약상 별도의 도급계약인데 실질을 따져서 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판단한다 이런 작년도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규정 중에 제가 노동부 자료도 하나 넣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보면 화물차주에 대해서 특수형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종사자인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현행법 또는 시행령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경우에서 노동법을 적용한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경쟁법을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으로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안 논의가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부위에서 발언할 때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의견을 상의했으면 싶습니다.

……………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님한테 여쭙보려고……

○위원장 백혜련 강민국 위원님부터 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오늘 화물연대 말씀 나와서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질의할 시간은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화물연대를 말씀하시길래.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인 거지요?

○위원장 백혜련 간사님들 간에는 지금……

○윤한홍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건지 질의한 건지……

○강민국 위원 저도 화물연대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질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건지 제가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여쭙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혜련 원래는 현안질의는 없고 대체 토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현안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안질의는 의결한 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양당의 한 분씩 정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백혜련 현안질의는 의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제
가……

○윤한홍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김종민 간사가 말씀도 하셨지
만, 사실은 예산을 숫자가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
이 힘으로 일방 처리를 한 것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이 함께 여기서 오늘 같이 정무위를 하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숫자 많다고 필요하면 날치기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법불합치 법률도 있고 연말까지 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이 지금 있습니다. 그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득이하게 이 자
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종민 간사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법안소위를
빨리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
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다가 수틀리면 또 날치기
하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날치기 안 하겠
다고? 그러면 여기 앉아서 열심히 논의하다가 안
맞으면 또 같이 여러분들만 모여서 일방 처리해
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법안소위를 할 수
가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말
씀하시는 것도 나중에 질의 시간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의사진행을 핑계 삼아서 다른 얘
기를 하게 되고,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우리는 300분의 1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데 각자가 서로의 위치를 적절하게
관리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

일단은 위원장님도 법안 처리를 우선 해 주시
고 나머지 질의나 이런 문제는 간사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지금 일단은 법안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질의 여부는 간사님
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200)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830)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720)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630)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667)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981)

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431)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6)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4)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2)

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0)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7)
3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3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5)
3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1)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8)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4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4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4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4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
5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5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5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5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3)
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75)
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2871)
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591)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78)
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97)
7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543)
7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7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6)
7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4)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5)
8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8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85.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593)
8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595)
88.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596)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9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1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1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1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2723)
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1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7)

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26분)

○위원장 백혜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0항까지 이상 1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종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과 22일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먼저 민병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등 일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운용 가능한 신용공여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성장 농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관 등 제공 시 전자문서 방식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약관 등 제공 방식에 팩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 총액 1000억 원 미만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 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등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를 나이가 많은 자녀로 한정하는 부분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해소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구자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갑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0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분야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윤한홍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과 24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의의결 신청 시 본 사건 심의의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를 허용하되 전자거래 방식의 재화 판매 시에는 다단계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가 퇴직 후 자기 직무와 관련한 신고 시 보상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게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의 진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 안건 89부터 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사실관계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의2를 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윤영덕 위원 여기에 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라고 하는 것이 드론이나 로봇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포함됩니다.

○윤영덕 위원 그래서 이동형 영상장비로 촬영을 할 때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의 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있어요. 촬영된 사람들이 정보주체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해서 알리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영상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개개인한테 직접 알리고 동의받는 그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에서의 동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영상정보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별개로 법안이 몇 개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법안이 나와 있는

영상정보에 관련된 법안을 추후에, 별도 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주체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규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 저는 1소위가 아니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상적인 규정으로 촬영의 그런 상황을 무제한으로 늘려 놓았을 때 이것은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엄격하게는 사전에 이걸 법원의 허가나 또는 사용 기간을 뒤서 그런 것들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전적인 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거나 혹시 이 개정안을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영상정보, 특히나 이동형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 주고 동의받는 그런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 절차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별도 법안이 발의된 게 몇 개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그 별도 법안을 통해서 정보 주체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를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위원장님, 그러면 그 별도 법안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법안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제가 법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금 민병덕 의원님 안이 있고 또 기존에 서영교 의원님이 내신 안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지금 제정법이에요? 제정법으로 발의된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제정법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러면 정무위 소관 법이라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 소관 법이에요? 확실하게 그 담당자가 알려 주세요. 정무위 소관 법 맞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정무위 소관

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 소관 법이라고 하면 향후에 다시 소위에서 논의할 때 지금 윤영덕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과 관련지어서 확실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 홍성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보험업법 개정안의 부칙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금융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적용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시중금리가 급등해 가지고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 IFRS17 기준을 2023년 1월 이전에 조기 적용하도록 해 주자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김희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저희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이게 회계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적용하자는 것에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기 적용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법률 개정, 부칙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희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험업법이 올라와 있는데 부칙이 빠져 가지고, 뒤늦게 발견이 돼서 부칙 개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반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희곤 위원 기재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인세법 개정안 부칙 조항이 논의가 됐었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평가에 따른 이익 그것은 조금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부칙 개정……

○김희곤 위원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상정돼 가지고 본회의 부의돼 있지요, 지금?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김희곤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인세법과 법체계의 정합성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적용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부칙에 빠졌거든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부칙에다 넣어 주시면 좀 더 법률적으로 명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법 개정하고의 조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곤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런데 지금 김희곤 위원님 제안은 조항을 하나 더 넣자는 의미신 거지요?

○**김희곤 위원** 예. 부칙에다가 조항 하나, 수정안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또 완전히, 하나의 추가적인 조문을 넣자는 논의여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금융위원장님, 그 질의에 대답은 하시고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칙에다가 명확하게 넣어 주시면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들이 이걸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나눠 주세요. 그리고 의견 들어보고, 이것은 새로운 조문을 넣는 문제기 때문에 소위 의결한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이 어떠신지 얘기……

○**이용우 위원** 저 한마디만.

○**위원장 백혜련**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기를 현재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부칙으로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시행령을 일단 개정을 하시고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합한 것 아닌가요?

○**김희곤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위원장 백혜련** 물론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다 하신다면 수정 의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종민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돌려놓고 잠깐 상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위에 의결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자고.

○**위원장 백혜련** 그러면 이 법은 빼놓고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위원님들한테 하나 다 깔아 주세요, 자료를.

보험업법 의사일정 55항입니다. 52항부터 54항까지를 통합 조정해서 55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지막에 보고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0항까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청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박구연 국무1차장님, 논의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위원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정말 청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이 돼야 되고 청년지원센터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년지원센터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국 위원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대답을 안 하니까……

○위원장 백혜련 대답이 없으시면 다 동의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4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109항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0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양 간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김희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는 간사님들 합의로는, 이게 어차피 금융위원장님께서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장 김주현** 기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하실 때 고쳐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위원장 백혜련**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위 의견에서 부칙 1조(시행일) 규정과 그 뒤에 2조로 해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적용례라는 신설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그때도 이미, 법안 발의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또 차관님이 참석을 하셔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29 이태원 참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바닷속도 아니고 바로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법률 하나하나 만들 때든 또는 집행할 때든 정말 긴장하고 ‘이런 게 어떤 문제는 혹시 없을까?’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말 꼼꼼하게 따져 보고.

법안 하나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그 폐해가 큰지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가 돼 가지고 지금 해결도 안 되잖아요. 그걸 다시 또 관련 세법 같은 거 좀 뜯어고치자고 하니 다수 의식에 막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대통령 공약 과제예요, 양당 과제. 그런데도 이게 정치적인 이런 논리에, 그것이 야말로 정파적 논리에 그냥 간혀 가지고서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잖아요.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든 정말 국민들 편에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법안 발의한다고 하지만 사실 입법 굉장히 허술하게 오는 것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직업, 관료 집단에서 또 전문가들께서 철저하게 스크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정말 졸속 입법에

다른 국민적 폐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됐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뒤늦게 아시고 지적을 하셔야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금융위원회도 있지만 정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각 장관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법 하나 만들어질 때 집행될 때 정말 문제가 없도록 경각심을 느끼시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혜련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쯤 의문이 있는데요. 수정안 2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IFRS17 조기 적용이 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자산운용한도를 이미 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보험업법 위반 상태, 실제로 처벌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업법 위반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수정안에 따르면 그런 회사들을 소극적으로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법 조항 수정하고 전혀 별도로.

여하튼 IFRS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산하고 부채 항목을 변경해서 회계처리를 한 회사라면 그것에 맞춰서 보험업법 자산운용한도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회사들을 사후적으로,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기 전의 위법 사항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위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한 가지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위원장 백혜련 예.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취지 자체가 현재 이미,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IFRS17을 조기 적용을 해서 자산운용 한도 위반으로, 그러니까 106조 위반이 된 회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조기 적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고요. 저희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안

에 따르면 IFRS17 도입으로 인해서 보험업법상의 어떤 자산한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유예기간을……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그것에 맞춰서 보험업법상 자산하고 부채 항목이 하나 바뀌는 건데 그건 1월 1일부터 하던 되는 건데. 지금 이 부칙을 굳이 추가하자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그런 위반 사항이 있는 것들을 위반이 아닌 것처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지금 현재 금리가 막 급등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회계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IFRS17을 내년도에 도입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할 경우에는 IFRS17을 갖다가 희망하는 데는 먼저 도입을 할 수 있게 해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FRS가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감독 규정 준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예기간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때부터 3년이 유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이 부칙을 넣겠다는 취지가 법 시행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봐주겠다, 봐준다고보다 위반이 아닌 것처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게 이해가 되게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법안소위 위원한테 그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고 나서라도 오늘 회의 전에 자료들을 주고 설명을 했으면 지금 이런 논의가 없을 텐데, 김희곤 위원님은 아시는 사안인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이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조항을 넣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급히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냐, 필요하면 법안소위를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하고 12월 말 전에 정무위를 다시 여는 한이 있

더라도 소위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동의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잠깐, 제가 하나만.

김한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요 금융위원장님, 미리 조기 적용 회사에서, 그러니까 위반했던 사례가 처벌되지 않는 사례로 바뀌는 회사가 있는 건지 그것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지금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산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면 자기네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또 부채 같은 것도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또 가격이 조정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회계상으로 재무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IFRS가 내년부터 도입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들도 외형상 재무제표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회망을 하는 경우에는 IFRS 적용을 미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이견이 없을 걸로, 지금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한 상황에서 어쨌든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걸 갖다가 미리 당겨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약간, 여기 나와 있는 유예기간 있지 않습니까, 3년 유예기간. 이런 것을 적용해 줘야만 아주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IFRS를 갖다가 조금 먼저 희망하는 경우에 내년부터 도입될 것을 조금 먼저 도입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급등에 따라서 회계적으로 조금 부실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안을 해소를 하고.

그런데 먼저 좀 당겨서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규정 위반, 규정에 안 맞는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법 개정 취지 자체가 3년간 유예를 주자는 거니까 그걸 적용을 동시에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김희곤 위원 제가 설명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일단은 소병철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소병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희곤 위원님……

○금융위원장 김주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 기준으로 해서, 현행 회계기준으로 해서 법 위반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 추정을 해 보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백혜련 소병철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희곤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통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것은 약간의 자구라든지 본안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해오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고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회계기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각 회사마다 교육을 시키고 대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예.

○소병철 위원 그런데 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적절해요. 더군다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기준 적용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서 엄청난 재산상의 평가가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회계기준 적용을 확일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례를 두는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법률가인 저나, 회계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 있을 때 관여를 했던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지.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냥 오늘 이렇게 별문제가 없다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일단 각 위원들이 내용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한규 위원이나 저나 지금 여기 있는 율사 출신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님이 그냥 동의해 가지고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백혜련 김희곤 위원님 발언만 듣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 제가 위법이나 불법을 하자고 하

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됐고 또 나중에 적용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기 적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 따라서 적용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 시중금리가 워낙 급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들 우려가 생겨 버린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일부 몇몇이.

그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험회사들 경우는 증거를 하든지 아니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자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조기 적용할 경우에는 부채평가액이 감소해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조기에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이 법안을 할 때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기를 안 하고, 막상 이게 된다고 보니까 일부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기재위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다 집어넣어 놔거든요.

그래서 아까 법체계의 정합성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해 주자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이게 특수하게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당겨서 하자 이런 취지고. 제가 금융위에도 수차례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지금 어쨌든 간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바꿀 때는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고 어쨌든 판단에 따라서 IFRS 조기 적용한 상태가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가 아닌 결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사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요. 당장 그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령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위에서 더 추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안소위를 내일이라도 열어서 한번 검토하고 다시 절차를 밟든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이 조항의 유무를 금융위로 넘기는 것은……

○위원장 백혜련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쨌든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선정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지역적으로나 또는 기능적으로 전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 법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운영 및 시정조치 이행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시 처분시효가 정지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되고 시정조치 이행 점검과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6개 법률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표시 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포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액 등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및 비대면 거래 문화의 확산을 반영하여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가맹 등 분야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가맹본부 등 수요자가 표준계약서 재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다양한 수요가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감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회계사법, 농어가저축법 등 4개 법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가저축법 개정안은 곤충사육업자 등 신성장 농어업 분야 종사자분들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다양한 수단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은행법·자본시장법·화재보험법·인터넷전문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의 5개 법안은 그간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 등으로 정해진 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관련 법안 심의 의결에 애써 주신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다른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직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퇴직 후에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신고자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 보정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심판 사건 처리와 국민들의 권리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급한 국가보훈처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 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불합치를 해소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신규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종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양 간사 간에 지금 강민국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만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박용진 위원까지 세 분…… 아, 오기형 위원님이 아니고 박용진 위원님 한 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강민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용진 위원님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드리세요.

○강민국 위원 강민국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민국 위원 지금 화물연대가 서울 강서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서구 화물연대본부 그리고 부산 남구 화물연대에 현장조사를 갔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진입을 고의로 막고 그러면서 현장 진입이 실패하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적으로 보장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고의로 막아서는 행위는 유례가 없는 사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공정위 조사관의 진입 자체를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번처럼 그렇게……

○강민국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의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현장 진입을 고의로 위력으로서 다수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견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민국 위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대한민국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정거래법 124조 보니까 고의적으로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규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공정거래법상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또 운송 거부를 강요한 행위와 또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된다고 돼 있던데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사업자단체라는 것은 지금 형태와는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돼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목소리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가 구성사업자의 운송 거부를 강요한 행위 그리고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이것 심각한 겁니다.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이걸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사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기들은 온갖 혜택 다 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을 때는 온갖 법을 이야기하고 변호사를 대동하면서 이런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은 이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고의적으로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조사 방해하는 행위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오늘은 일단 조사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다시 또 조사

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노조에서는 사용자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사용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노동관계에 관한 그 구성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이것은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써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내일 다시 또 조사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정치적 파업 맞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운임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니까? 그게 허구인, 말도 안 되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안전운임제라는 게 지금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획일화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운임 책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18년도에 안전운임제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에서 하는 전 품목을 해달라는 건데 이것 지금 철강·곡물·냉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주마다 단가가 달라요. 이것 어떻게 획일화된 단가로, 지금 불가능한 것을 안전운임제 하자는 것 정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거잖아.

그리고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화물운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국가가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후신고제를 바탕으로 지금 표준운임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원가제로 지금 자율운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정치적 구호 하는데 또 이걸 별개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비조합원의 운송까지 방해하는 행위 또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당연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위원장 백혜련**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인식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해외 사례 또 우리의 판례 또 노동부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공정위원장은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공정위의 역할은 법의 테두리 벗어나면 엄정 대응하는 거다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화물차주가 사업자들이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공정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조금 말씀드리면 화물연대의 단체교섭활동 관련해서 공정위 입장은 합법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합법적인 교섭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박용진 위원** 그게 공정위의 역할이다, 그 말씀이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이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거든요, 여덟 차례. 그때는 왜 개입 안 하셨어요? 그때 다 합법이었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일단 그전에 이런 유사상황과 관련해서 신고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신고가 돼서 건설노조 관련해서 그 사안을 다루고 있고요.

○**박용진 위원** 아니아니요, 화물연대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박용진 위원**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관련해서……

○**박용진 위원** 단 이전 정권요,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박근혜정부 때 한 차례,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한 차례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덟 차례나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다 합법이에요? 그게 아닌데 공정위가 그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저렇게 칼춤을 춰요?

공정위원회가 가져야 될 기준의 엄정함 또 공정위가 들이대야 할 칼날의 매서움이 정권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 태도에 따라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앞의 일곱 번이나 가만히 있었어요? 이전 정부에서도 일곱 번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앞의 공정위 뭐 했어요?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요. 앞의 공정위는 뭐 하고 지금 공정위는 이렇게 매서워요, 똑같은 불법인데?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앞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뭐라고요? 공정위원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뒤에 카르텔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예.

○**박용진 위원** 이전 정부 때도 계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예, 제가……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회의할 때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이유는 뭐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지금 공정위원장님 나 모르겠다고 그러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카르텔 조사국장입니다.

○**박용진 위원**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이전에도 저는 근무는 했었는데 카르텔에 있지는 않았 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진짜 공정위원회 너무하네!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이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위원회가 화

물연대 파업에 이렇게 칼 들고 나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러냐고요.

그런데 카르텔국장은 이번에 조사 담당 주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예, 맞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의견 제시도 안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이번에 저희가……

○박용진 위원 하는 게 맞아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예, 사업자단체에서……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의 엄정함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야지요. 기업이나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형법을 어기면 그걸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하잖아요.

공정위가 여기 왜 나섭니까? 대통령실에서 혹시 연락받은 것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느 회의장에서 이런 결정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용진 위원 어느 회의에서 이런 결정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공정위 내부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 무슨 회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누구랑요? 회의를 했다면서요. 거기 참가하고 참여해서 의견 냈던 회의록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확인 좀 해 봅시다. 무슨 근거로 과거에는 가만히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잘한 건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인지 확인해 봐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사를 막은 적 있느냐 했더니 우물우물하시던데 삼성웰스토리 현장조사 들어갔을 때 조사방해 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애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할 때 조사방해 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용진 위원 그런데 애플 조사방해 있었을 때에는 검찰에 통보도 안 했지요? 그때 검찰이 그것 때문에 엄청 빨라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애플 조사방해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박용진 위원 어쨌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공정위가 엄정한 조사를 들어가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었느냐 했더니 우물우물하셨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한 적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거부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뭘 이렇게까지예요. 다 숨기고 다 가로막고 이렇게 했던 것, 삼성웰스토리 때도 그랬고 애플 때도 그랬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후에 조사방해죄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셨어요, 그때는? 검찰에다 통보하고?

공정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용진 위원 공정히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보내 주세요, 회의록.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이랑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자료 요청에 한정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존재 의의를 무시하고 이해를 못 하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 점을 제일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

래법의 존재 의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배반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해서 이런 경우에는 현안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간, 충분히 토론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간 간사 간에 협의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음 정무위 할 때는 충분히 이 주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건 관련해서 화물연대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회의록과 그다음에 실제 그 경위를 별도로 서류로써 다 보고를 제출해 주고 그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혜련 지금 어쨌든 자료 요청이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화물연대 조사와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법률안은 놀랍게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입니다. 오늘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정무위의 입법 성과는 제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무위 소관 법률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이 대부분입니다. 테라·루나·FTX 사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법률안은 정파성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정책과제입니다. 여야가 하루속히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조속히 소위를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22인)

강민국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박성준	박용진
백혜련	소병철	송석준	양정숙
오기형	유의동	윤상현	윤영덕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최승재	황운하		

○청가 위원(2인)

민병덕 박재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청년정책기획관	김진남		
국가보훈처			
처장	박민식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기획조정관	이순미		
소비자정책국장	남동일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이세훈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정책관	이윤수		
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금융안정지원단장	김기한		
금융정보분석원	손영채		
제도운영기획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김기선		
행정심판국장	민성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시42분 산회)

위	원	장	고	학	수
기	획	조	정	두	석
개인정보	정책	국장	이	정	렬